

#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5,068,497	14,852,055
일반회계	435,775,883	13,073,276
특별회계	59,292,614	1,778,778
공기업특별회계	51,842,720	1,555,282
상수도공기업	19,013,104	570,393
하수도공기업	32,829,616	984,888
기타특별회계	7,449,894	223,497
의료급여기금운영	1,277,756	38,33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61,136	13,834
농공지구조성사업	1,937,535	58,126
공영개발사업	411,520	12,3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014	3,120
수질개선	495,750	14,873
주택사업	2,241,967	67,259
기반시설	18,291	549
장기미집행	501,925	15,05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24,02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제3회 추경예산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